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19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20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5. 4. 16.

판 결 선 고 2015. 5. 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8,840,4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위 각 세금에 대한 가산금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란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8,840,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따라서 광주광역시로 이관되어 발생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금 12,921,470원).'로 청구취지를 기재하였으나,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19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등

원래 B의 소유이던 [redacted]구 C 임야 29,174㎡ 및 D 임야 4,783㎡(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6. 8. 2. 원고 명의로 2006. 7.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6. 10. 31. E 명의로 2006. 10.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의 취득세 부과 처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원고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6. 9. 13.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8,840,4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과대상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본세	가산세	본세	가산세	
[redacted]구 C	5,776,450원	1,172,610원	577,640원	57,760원	7,584,460원
[redacted]구 D	956,600원	194,180원	95,660원	9,560원	1,256,000원
합 계					8,840,460원

다. E의 형사판결

E은 2009. 5.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방법원에서 '2006. 8. 2.경 [redacted]구 [redacted]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 직원으로 하여금 E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B로부터 구입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6. 7.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19

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아래에서는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의 취득세 일부 납부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1. 28. 1,506,900원, 2015. 1. 27. 5,000,000원의 취득세를 일부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E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효이고, 이러한 경우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및 그에 대한 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위반한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19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취소소송은 처분이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및 제73조, 제74조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임의적 전치절차로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그에 따른 심사청구 절차 등의 행정심판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은 원처분인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스스로 2007. 4. 4.경부터 광주광역시청 및 광주광역시북구청을 방문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2015. 3. 26.자 답변서 제2쪽), 원고는 적어도 위 시점부터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인 2006. 9. 13.부터 1년이 경과한 2015. 1.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달력에 의한 계산상 명백하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함으로써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2007. 4. 4.경 이후 광주광역시북구청 및 광주광역시청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19

방문하여 구제방법 등을 문의하여 행정소송을 거치라는 답변을 듣고, 원고가 수십차례에 걸쳐 부동산실명법 재판중임을 호소하였는바, 이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이 부동산실명법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강회

판사 장우석

판사 류지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19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제73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4조(심사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19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개정 1994.12.22>)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19

것)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끝.